

## 1. 개정이유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시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·과정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·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(법률 제21112호, 2025. 11. 11)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실적보고 세부 항목을 마련하는 한편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을 정비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유치사업자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
- 나. 유치사업자의 실적보고 항목 중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인 외국인환자의 입국일과 출국일을 삭제함(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)
- 다. 유치의료기관의 실적보고 항목으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·과정 등에 대해 세부 보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안 제9조제1항단서, 다목 및 라목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1항”을 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사항은 보고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.

다.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·과정, 유치유형 및 유치사업자의 소개

· 알선 여부

라. 외국인환자별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

나.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, 입원  
기간, 주 질병·부상명 및 외래  
방문일수

< 신 설 >

< 신 설 >

2.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:

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가.·나. (생략)

다.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 
출국일

나.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, 입원  
기간, 주 질병·부상명 및 외래  
방문일수

다.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·  
과정, 유치유형 및 유치사업자  
의 소개·알선 여부

라. 외국인환자별 유치 수수료  
및 진료비

2. -----

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